



신태하 귀하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,

510호 (신정동)



1020750702558

08023

신태하

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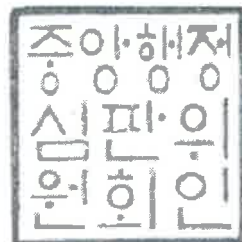
재 결 서

① 사 건	2021-1096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		
청 구 인	② 이 름	신태하	
	③ 주 소	우 : 163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번길 25, 626동 1902호 (정자동, 청솔마을 SK한화아파트)	
선정대표자· 관리인·대리인	④ 이 름		
	⑤ 주 소		
⑥ 피청구인	경기도남부경찰청장	⑦ 참가인	
⑧ 주 문	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		
⑨ 청구취지	피청구인이 2021. 7. 20. 청구인에게 한 2021. 8. 22.자 제1종 보통,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		
⑩ 이 유	별지기재와 같음		
⑪ 근거법조	「행정심판법」 제46조		

제31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.

2021. 9. 7.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

<안내말씀>

귀하께서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시고자 하는 경우,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(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은 각 지방법원)에 위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거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
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재 결

사 건 2021-1096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청 구 인 신태하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번길 25, 626동 1902호(정자동, 청솔마을 SK한화아파트)
[송달장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, 510호(신정동)]
피 청 구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
심 판 청 구 일 2021. 7. 27.

주 문

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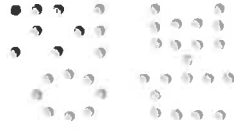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피청구인이 2021. 7. 20. 청구인에게 한 2021. 8. 22.자 제1종 보통,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이 2021. 6. 11. 혈중알코올농도 0.153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



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1. 7. 20.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였다.

2. 관계법령

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, 별표 28 중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

3. 인정사실

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7. 12. 2.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9. 1. 29.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1. 9. 2.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, 2021. 6. 16.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.

나. 청구인은 2021. 6. 11. 19:0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대로 69-54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,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: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153%로 측정되었다.

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가. 관계법령의 내용

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.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,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



술에 만취한 상태(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)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.

나. 판단

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,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,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,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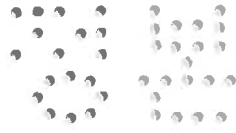
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2021. 9. 7.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



알려드립니다

(중앙행정심판위원회)

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재결일자 및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재결일자 : 2021. 9. 7.

2. 기타 안내사항

가. 이 재결의 효력은 귀하께서 재결서를 받으신 때부터 발생합니다(「행정심판법 제48조제2항」).

나. 기각 재결을 받은 경우

◆ 귀하께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시는 경우,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(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각 지방법원)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제1항).

◆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재결서를 받으신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.

◆ 재결이 있으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51조).

다. 인용(일부인용) 재결을 받은 경우

◆ 인용(일부인용)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므로 피청구인은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재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49조제1항, 제2항, 제3항).

◆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인용(일부인용)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귀하께 일



정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의 이행시까지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재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50조의2).

※ 재결서 받은 날짜는 재결서 주소 옆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우체국 홈페이지(www.koreapost.go.kr)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청구인 경우에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(www.simpan.go.kr) 마이페이지> 나의 사건 현황> 송달문서 목록에서 재결서를 확인한 날짜에 재결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54조제4항).

※ 문의 : 110